

# EU의 'GDPR 적정성결정' 을 위한 입법 과제

김현경(Hyunkyung Kim)\*

이경준(Kyungjune Lee)\*\*

## < 차례 >

I. 문제의 제기	III.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입법과제
II. 적정성 평가의 의의와 일본사례 검토	1. 독립적 감독기구
1. 적정성 평가의 의의	2. 개인정보 역외이전
2. 일본의 입법조치와 적정성 결정	3. 유관법제의 통일성 확보
3. 일본의 적정성결정의 한계	4. 기타
4. 소결	IV. 결론

## <국문요약>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자국민 데이터가 외국기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전되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데이터 주권 상실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적정성 결정을 득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은 대체로 충족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 등 영역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부분은 법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많이 두면 들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의 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명목적인 지위만 지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명백히 예외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한 신규 혹은 별도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결정, 독립적 감독기구, 개인정보 역외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개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 박사과정

## I. 문제의 제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데이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모든 기술·서비스 구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데이터’다. 5G 네트워크 구축에 수 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에 걸맞는 양의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투자다.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 교역이 물리적 국경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국경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장이다. 7억 명이상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유럽 토종 글로벌 플랫폼이 없다. 한국의 네이버나 중국의 바이두 같은 자국 기업이 없는 대신,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해당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독점전횡에 대한 유럽의 반(反)기류도 심상치 않다. 유럽은 디지털 경제의 패권이 미국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데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기업들도 유럽 시장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네이버만 해도 작년에 프랑스 현지법인으로 ‘네이버 프랑스’를 설립하고 2천 5백 억 원의 투자를 감행하였다. 삼성전자 역시 파리에 인공지능 센터를 세웠으며 그밖에 넥슨, 카카오 등 주요 IT기업들도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에 따른 ‘적정성 결정’이다. GDPR은 자국민 데이터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외국기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데이터 주권 상실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EU 시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것이다. 적정성 결정 대상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며, 국제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EU법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함축적 의미도 지닌다.

일본은 올해 초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EU집행위를 찾아가 협조를 구하였더니 ‘적정성 결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였으나, 2016년 10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적격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평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됐다. 부랴부랴 지난해 11월 이러한 사안을 보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정치적 논쟁,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법안의 통과가 요원해 보인다.

‘적정성 결정’이 지연되면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GDPR 위반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국내 대형 온라인 게임업체들조차도 EU 거주자의 데이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지만 대응은 이제야 시작단계다.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디지털경제의 공룡인 구글과 페이스북조차도 유럽 GDPR이 적용되자마자 제소 당했다. 유럽의 지

배적 사업자인 미국기업이 이처럼 개인정보 이슈로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경제의 승자독식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혹은 시민단체·정부·기업 간 갈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입법전략 측면에서 ‘적정성 결정’을 위한 보완입법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적정성 평가의 의의와 일본사례 검토

### 1. 적정성 평가의 의의

#### 가. 유럽시민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한 규율

GDPR은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본 규정은 유럽연합역내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고, 이 때 해당 처리가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역내에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럽연합 역외지역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유럽연합 역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처리활동인 경우 이에 대한 실제로 비용 지불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법이 적용된다.<sup>1)</sup>

즉 대한민국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영역 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GDPR 제45(3)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을 득한 경우(이하 “적정성 결정”이라 한다), 2) 표준데이터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SDPC, 舊SCC) (제46조제2항 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GDPR 제47조)<sup>2)</sup> 등 제46조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하 “적절한 안전조치”라 한다), 3) 1)과 2)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정성 결정’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결합되어 정보주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받은 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has explicitly consented) 경우(이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라 한다)에 가능하다.<sup>3)</sup>

‘적절한 안전조치(2)’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3)’의 경우 유럽진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과 경제적인 교류가 늘고 있는 제3국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계약체결을 통한 이전은 각 국의 법률적용 및 검토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sup>4)</sup>

1) 제3조제2항, Recital 23

2) 다국적 기업 내부에 구속력을 갖는 보호지침 마련 및 당국 승인이 필요하다.

3) GDPR 제49조제1항(a).

그러나 ‘적정성 결정(1)’의 경우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적정성 결정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적절한 안전조치(2)’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3)’의 방식에 의해서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가능하다. 한국기업들이 주로 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이전할 수는 없지만, 실제 EU시민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나.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 및 절차

##### (1) 주요내용

GDPR은 제44조부터 제50조에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핵심은 제45조(적정성 결정)이다. EU의 GDPR 인증은 4년 단위로 진행된다.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국제기구 포함)으로의 EU시민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의 ‘재이전’도 동일하게 해당 규범들이 적용이 된다.<sup>5)</sup> ‘적정성 평가’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성 결정을 받은 제3국의 경우(국제기구 포함) 특별한 허가(승인)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둘째, 적정성 평가 시 특별 고려요인을 세 가지 규정하고 있다.<sup>6)</sup>

(a)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된 직·간접적 제도와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한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 공공안보, 국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전반적·영역별 법률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법률의 시행,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효과적으로 집행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수단이 있는지, 제3국으로부터 이전된 개인정보의 주체라 할지라도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적·행정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이다.

(b) 다음으로 독립된 감독기구 존재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다. 적절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및 조언이 가능한지, 그러한 독립 감독기구가 EU 국가들의 감독기구와 협력이 가능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c) 세 번째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국등이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문서, 다자간·지역적 조직에의 참여로 인한 의무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정기적 검토 및 모니터링에 대하여 규율한다. 시행법률은 정기적 검토를 위한 절차를 규정해야 하고 적어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모든 관련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감독기구를 명확히 하고, 집행위원회는 적정성결정 사항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3국의 개인정보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sup>7)</sup>

넷째, 적정성 결정의 철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적정성결정을 득한 제3국

4) 오태현·강민지, “EU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5., 11-12면.

5) Recital (101).

6) Article 45(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2.

7) Article 45(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3,4

이 더 이상 적정성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급효 없이 적정성 결정을 철회, 수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철회 등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제3국 등과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sup>8)</sup>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적정성 결정을 위해 고려되는 사항은, ①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권리 침해 시 구제 수단 등이 완비된 개인정보 관련 법률 및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제3국으로 이전된 EU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핵심이므로, 역외로부터 이전된 개인정보에 역시 침해되었을 때 권리보장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 혹은 역외에 거주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도 보장되는지가 검토의 중점사항이다. ② 다음으로 독립성·집행력 있는 감독기구의 존재이다. 추후 지속적으로 적정성 결정에 부합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감독기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감독기구는 역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시 또는 권리집행 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정성 결정을 득하였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적정성 결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 적정성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회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유럽집행위원회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역할 역시 독립적 감독기구의 역할이다. 따라서 적정성 결정에서 그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 결정의 지속적 유지’ 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요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적정성 평가 절차

적정성 평가의 신청은 적정성 결정을 득하고자 하는 제3국에서 적정성 심사를 신청하거나 EU 집행위 주도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에는 전체 적정성과 부분 적정성 결정이 있다. 신청 후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sup>9)</sup>의 심사를 거쳐 EU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제31조 위원회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가 완료되면 EU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U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통상 2~4년 소요된다.

### <표1> EU 적정성 평가 절차<sup>10)</sup>

8) Article 45(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5,6

9)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EU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 EDPS 대표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을 제시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6.1),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 2018년, 적정성 평가 성과 내기로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U 집행위의 제1차 결정	유럽정보보호이사회 (EDPB) 의견 제시	EU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승인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
※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유지, 수정 또는 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단, EU 집행위는 2·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 수행			

#### 다. 적정성평가 국가 현황

현재까지 총 13개국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sup>11)</sup>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섬들과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우루과이, 2016년에는 ‘EU-US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에 따라 미국이 인정을 받았다. 최근 일본이 적정성 평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GDPR시행 전 개인정보 일반지침인 ‘개인정보 보호 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기하여 승인된 적정성 결정을 승계한 것이며<sup>12)</sup> GDPR에 따라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서 ‘적정성 결정’이 된 사례는 일본이 최초이다.

## 2. 일본의 입법조치와 적정성승인

### 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개관

1990년대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민간부분에 대하여 당시 통산성 소관의 「민간부분에 관한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1998년에는 공공부분을 규율하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미흡, 벌칙규정 부재 등으로 그 실효성이 문제되었다. 이후 2003년 5월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영역별 규율 한계의 노출,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부재, 신기술 발전과 산업적 안전활용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였다.<sup>13)</sup>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화하고,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민감

11)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data-transfers-outside-eu/adequacy-protection-personal-data-non-eu-countries\\_en](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data-transfers-outside-eu/adequacy-protection-personal-data-non-eu-countries_en) (2019.4.7. 확인)

12) GDPR 제96조(이전에 체결된 협정과 관계)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회원국들이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체결하고,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법률에 부합하는 국제 협정은 개정, 대체, 또는 폐지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13) 이 법은 201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설치 등 각 조항 별로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오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정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도 보호할 목적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가공방법 및 취급 등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을 총괄하도록하고, 출입조사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기존의 각 산업 분야별 주무장관의 감독업무를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나. 감독기구의 개선

일본은 기존 각 산업 분야별 주무장관의 감독업무를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독립적 감독기구의 위상을 갖추고자 개정을 단행하였다. 주무대신이 집행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내각총리대신 소속의 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집행 및 감독기능을 부여하였다.

감독기능의 하나로서 ‘보고 및 출입검사권’ 및 ‘지도 및 조언’에 대한 권한을 신설하였다(법제40조 및 제41조). 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포함)의 의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또는 익명가공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사무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또는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고 및 명령권’을 신설하였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보호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의 중대한 권리이익의 침해가 임박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2조제2항). 보호위원회는 앞의 두 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 제1항, 제24조 또는 제36조 제1항, 제2항 혹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개인의 중대한 권리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이 있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2조제3항).

한편 보호위원회는 긴급 등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 범위를 정하여 소관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44조). 보호위원회는 사업소관대신이 제정했던 41개의 각 소관 분야 가이드라인을 폐기, 통합 및 재·제정 등 개편하여 우선 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sup>14)</sup> 사업소관대신이 수행해오

1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통칙 편, 외국 개인정보 제공 편, 제3자 제공 시 확인, 기록의무 편, 익명

던 관련 업무를 정비하였다. 나아가 금융분야 안전조치 실무지침, 신용분야 가이드라인, 의료관련 가이드선 등 소관 분야에 특수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소관대신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또한, 각 사업소관대신이 감독했던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에 대해서도 보호위원회가 그 감독권한을 수행한다(제47조부터 제58조).

그밖에 보호위원회 권한행사의 독립성(제62조), 임기(제64조), 신분보장(제6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부서로서 지위를 갖고 있고, 그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

#### 다. 역외이전 제한 규정

해외로부터 일본에 이전된 개인정보가 일본으로부터 제3국으로 다시 재이전 될 경우, 당해 제3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불충하다면 결국 일본을 통해 해당 정보 주체의 권리는 침해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즉 일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적절치 않은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면 일본에의 개인정보 전송 내지는 이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sup>15)</sup> 따라서 일본에 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에의 재이전(Onward Transfer)에 대하여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역외이전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일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는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sup>16)</sup> 이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외국(일본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前條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sup>17)</sup> 미리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외국’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있다. 즉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등한

---

가공정보 편 등.

15) 宇賀克也,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第5版], 有斐閣, 2017, 174면.

16) 제24조(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외국(일본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에 있는 제3자(개인데이터의 취급에 대하여 이 節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前條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을 인정하는 취지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同條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제23조(제3자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근거한 경우
2.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3.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4.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



보호수준을 가진 외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를 외국에 제공할 경우, 법령에 근거한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해야 하나, 일본과 동등한 보호수준을 가진 외국과의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동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 라.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화하고,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도 보호할 목적으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가공방법 및 취급 등 규정을 신설하였다. 익명가공정보, 마이데이터 등이 반드시 적정성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자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진다.

### 3. 일본의 적정성 결정의 한계

#### 가. 보충규범의 채택

일본은 적정성 결정 과정에서 ‘EU로부터 이전 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것을 약정하는 보충규범(Supplementary Rules, 부속서 Annex I)을 채택하였다.<sup>18)</sup> 즉 이 보충규범은 EU로부터 이전된 개인정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일본 개인정보와 EU개인정보를 둘 다 처리하는 일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태깅** 기술이나 조직적 분리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일본 개인정보와 EU개인정보를 식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부속서의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일본과 EU간 상호 원활한 개인정보의 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EU를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정한다. EU역시 GDPR 제45조에 따라 일본이 개인정보 적정성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EU간 상호 원활한 개인정보의 이전은 높은 수준의 개인의 권익보호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성 결정에 따라 EU로부터 이전된 개인정

1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Japan), Supplementary Rul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Handling of Personal Data Transferred from the EU based on an Adequacy Decision, <https://www.ppc.go.jp/en> (2019.4.9 확인),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annex\\_i\\_supplementary\\_rules\\_en.pdf](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annex_i_supplementary_rules_en.pdf) (2019.4.14확인)

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신하기 위하여, 두 국가 모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양 국가의 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보충규범을 채택한다.

특히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정부가 개인정보의 성질 및 이용방법을 고려할 때, 개인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나 적절한 취급의 엄격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각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기관 및 그 밖의 국제적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법의 집행에 상응하는 권한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적정성결정에 기하여 EU로부터 이전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기준을 제공하고자 본 보충규범을 만든다.

이 보충규범은 EU의 적정성 결정에 따라 이전된 EU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을 구속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 보충규범에 위배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밖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20)</sup>

#### 나. 보충규범의 주요 내용

##### (1)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sup>21)</sup>

적절성 결정에 기반하여 EU로부터 이전받은 개인정보(이하 “EU개인정보”라 한다)가 자연인의 성생활, 성적 취향 또는 노동조합가입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즉 GDPR상의 특별한 범주의 개인정보로 정의되어 있는 정보라면,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sup>22)</sup>

##### (2) 보유개인정보(Retained personal data) (제2조 제7항)<sup>23)</sup>

EU개인정보는 그것이 삭제 될 기간과 관계없이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항의 보유

---

19)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1항

20) 위의 보충규범 1~2면.

21)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를 배려를 요하는 정보(要配慮個人情報)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영문으로는 Special care-required personal information라고 표기하고 있는바, 본 고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정보’라 칭한다.

22) 제2조(정의) ③ 이 법률에서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라 함은 본인의 인종, 信條, 사회적 신분, 病歷, 범죄의 경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밖에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記述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23) 제2조(정의) ⑦이 법률에서 “보유개인데이터”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開示, 내용의 정정·추가·삭제, 이용의 정지, 消去 및 제3자에게의 정지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개인데이터로서, 그 존부가 밝혀짐에 따라 공익 기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1년 이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삭제하게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진다. 그러나 EU개인정보가 “그 존부가 알려짐에 따라 공익 기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령(Cabinet Order)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보유개인정보로 취급되어지지 않는다.

(3) 이용 목적의 구체화,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Specifying a utilization purpose, restriction due to a utilization purpose)(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제16조제1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데이터의 제공을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3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 및 제3자에 의한 당해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제3자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同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해 당해 확인에 관한 사항을 속여서는 안된다(제26조 제2항). 또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은 연월일,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6조제3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EU개인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기록된 개인 정보의 취득 경위에는 ‘EU로부터 받은 이용 목적’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다른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EU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기록된 개인 정보의 취득 경위에 그러한 정보를 받게 된 이용목적은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EU개인정보가 일본으로 이전된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4) 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제공의 제한(Restriction on provision to a third party in a foreign country (제24조등)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EU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그러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사전 동의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러한 승인을 받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동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면제된다. ‘i) 제3자가 개인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일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식 될 만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i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와 개인정보처리사업자가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계약 또는 다른 형태의 구

속력 있는 협정, 기업 내부에서의 구속력 있는 약정 등을 의미함)과 일맥상통하는 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iii)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다.

#### 4. 소결

자국의 법률을 특정 국가와 교류를 위해 완전히 그 특정 타국의 입법에 맞출 수는 없다.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이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손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일본의 적정성 결정은 일본의 법규가 GDPR과 완전히 일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양국의 교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EU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향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협의함에 있어 적정한 권한을 가진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감독 기관이 법률상 명확해 졌기 때문이다. 만약 EU 입장에서는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협의할 기관이 불명확하거나 독립성이 미흡하다면 논의창구로서 하등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관련 형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의 보호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증명한 바이다. 오히려 너무 강력한 보호체계 덕분에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한 나라로 등극하고 있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는 적정성 협의 과정에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평가를 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방통위의 부분적정성 과정에서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위 있는, 즉 유럽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주된, 명확한 이유이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의 첫 단계는 EU가 신뢰할만한 개인정보 협상 창구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GDPR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해서 라기 보다는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 협의 창구가 신뢰성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법제 간 불일치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보충규범으로서 부속서를 채택한 것도 일본의 법이 GDPR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용과 인력 면에서 개별적 대응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sup>25)</sup> 우리 기업이 유럽과의 교류함에 있어 적정성 결정이 중요하다면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한 전략적 입법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적정성 결정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민단체와 여/야, 기업 간 이견이 큰 부분은 향후 순차적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적정성 결정을 득한 후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성 유지에 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하고, 최소 4년마다 재평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선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예와 같이 GDPR의 적정성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보충규범 등 부속서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를 협의할

24)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수준은 2017년 기준 63개국 중 56위이며, 국내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 7.5%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은 2018년 기준 미국과의 격차 1.8년, 데이터분야 기술은 2017년 기준 미국대비 79% 수준이다.

25) 기업 방패 왜준 日정부, 열달 뒷집 진 한국정부(2019.3.19.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90319/94621475/1> (2019.4.8. 확인); 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뭉”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 책임 평풍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뭉”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 책임 평풍(2019.3.19.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90319/94621525/1> (2019.4.8. 확인)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관의 존재는 필수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우선적 입법과제는 단연코 EU와 창구역할을 수행할 감독기구의 설치이다. 감독기구는 그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의 완비이다.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GDPR의 적정성 평가에서 민감한 요인이다. 적정성 조항이 들어가게 된 근본적 원인이 결국 EU시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으로 이전된 EU시민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개인정보 수준이 불충분한 제3국으로 다시 이전 될 수 있다면 GDPR의 우회/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체계화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부분적정성 승인을 받으려 했다가 거절된 만큼 이제 현재의 분산된 법체계로는 적정성 결정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긴급하므로 이하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 III.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입법과제

#### 1. 독립적 감독기구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기능과 권한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인 강력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집행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일부 사항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즉 감독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독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2016년 10월 적정성 평가에서 적정성 요건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완전한 독립성(예산, 인사, 조직 등)과 집행권한(조사권, 제재권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과제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집행권한 강화 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국회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sup>26)</sup>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제63조).

이를 위해 기존 행정안전부의 기능이었던 개인정보보호지침수립(제12조), 개인정보파일등록(제32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32조의2), 영향평가(제33조), 유출신고(제34조), 침해사실 신고 접수(제62조), 자료제출 요구(제63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결과공표(제66조), 벌칙(제71

26) 의안번호 16621, 인제근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발의

조), 과태료 부과(제75조) 등을 보호위로 이관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장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삭제하여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기능을 보호위로 이관하고자 한다. 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감독·조사·처분 등 집행기능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보호기능 등을 이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에 대한 조사 처분권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을 포함한 특수영역에 대하여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부여 등 보호위의 통합(개정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하에서는 GDPR에서 규정하는 감독기관의 기준과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논한다.

#### 가. 독립성 및 위원회 구성(GDPR 52)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소속변경을 하면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GDPR이 규정하는 ‘독립성’ 요건(제52조)은 i)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의 완전한 독립성, ii)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 외부 영향 배제, iii) 감독기관 위원들의 이해상충행위/직무 금지, iv)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필요한 인력/기술/예산 및 인프라 보장, v) 감독기관 구성원의 지시만 따르는 자체인력 선정 및 보유, vi) 국가 전체 예산의 일부로서 연간 공식 예산 보장 등이 있다.

외부의 영향이 배제되어야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i)과 ii)는 상호 이질적/독립적 요건이기보다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는 요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7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조사 및 처분,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사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안 제7조제2항). 또한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을 겸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정치적 편향성 방지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sup>27)</sup>

개인정보감독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조직상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이 행정부 소속의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도 있다. 현행 개정안의 모델은 후자라고 판단된다. 다만 “호호위원회는 높은 독립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을 유지해야 하고 개정안 제7조제2항 관련 보호위원회의 업무 전체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거나 국가인권

27) 이성엽, “개인정보보호3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특집세미나 자료집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18.12.18., 33-36면.

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구화 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sup>28)</sup> 학계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는 통제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을 감독해야만 하며 특히 경찰과 첩보기관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결국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통제기관을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관은 충돌하는 여러 이해관계들을 형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분도 법관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29)</sup>

그러나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집행권의 대통령 귀속원칙, 행정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비추어, 인권위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권 행사의 예외적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헌법 합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헌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sup>30)</sup> 등에 비추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독립성”이라 함은 정치적인 간섭 또는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기득권세력의 영향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기능적 독립성을<sup>31)</sup>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조직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중요하나, 우리의 현실에서 감독기능의 실효성도 함께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합감독기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를 함께 감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위상을 갖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려하는 독립성 문제는 조직구성과 임명방식, 예산, 기능 등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대상에 국회/법원/헌재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에서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문제된 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감독기관 위원들의 이해상충행위/직무 금지(iii)와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영리업무에 종사금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 등 겸직금지(안 제7조의6), 결격사유(안 제7조의7), 신분보장(안 제7조의5 제1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의11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GDPR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필요한 인력/기술/예산 및 인프라 보장(iv)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안 제7조의13)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 보장이 가능하며, 보호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권한

28)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97531> (2019.4.7. 확인)

29)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7-05, 한국법제연구원, 1997, 196 - 198면 참조.

30) 이성엽, “한국의 ICT 거버넌스 체질개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行政法研究』 第34號,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12, 229 - 253면.

31) 이러한 기능적 독립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 (i) 임기제에 의한 임명, (ii) 무능, 직무태만 또는 중대한 비행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직, (iii) 국가원수 또는 입법부에 대해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해 공적으로 논평할 수 있는 권한, (iv)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법적인 소추를 개인적으로 받지 않을 특권, 그리고 (v)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 ICDPC, "Criteria and Rules for Credentials Committee and the Accreditation Principles", B. 2. 참조. 이 기준은 2001년 9월의 제23차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9월의 제24차 국제회의에서 일부 개정되었다. 원문은 <[http://www. privacyconference2003.org/pdf/Criteria\\_and\\_Rules.pdf](http://www.privacyconference2003.org/pdf/Criteria_and_Rules.pdf)>.

행사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확보 가능하다. ‘감독기관 구성원의 지시만 따르는 자체인력 선정 및 보유(v)’, ‘국가 전체 예산의 일부로서 연간 공식 예산 보장(iv)’ 이라는 요건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처 설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타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 예산 수립절차에 따라 증장기 또는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GDPR ‘독립성’ 요건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 GDPR 독립성 요건과 개정안 내용 비교

GDPR	개정안	분석
i)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의 완전한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 사무의 독립적 수행 규정(안 제7조제1항)</li> <li>- 국무총리 소속(안 제7조제1항)</li> <li>①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조사 및 처분,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사무 ②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정부조직법」 제18조) 적용 배제(안 제7조제2항)</li> <li>- 위원의 겸직금지(안 제7조의6)</li> <li>-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7조의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사무의 독립적 수행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li> <li>- 수범대상에 국회/법원/헌재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에서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문제된 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li> <li>- 선출직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li> </ul>
ii)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 외부 영향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겸직금지(안 제7조의6)</li> <li>-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7조의7)</li> <li>-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5 제1항)</li> <li>-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의11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금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 등 겸직금지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성 요건 충족</li> </ul>
iii) 감독기관 위원들의 이해상충행위/직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안 제7조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으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권한행사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확보 가능하므로 적정성 요건 충족</li> </ul>
iv)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필요한 인력/기술/예산 및 인프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처</li> </ul>
v) 감독기관 구성원		



의 지지만 따르는 자체인력 선정 및 보유	해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안 제7조의13)	설치 근거로 적정성 요건 충족
vi) 국가 전체 예산의 일부로서 연간 공식 예산 보장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안 제7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으로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가 전체 차원의 연간 예산 확보 가능하므로 적정성 요건 충족

GDPR 제53조에서는 감독기관 위원들의 일반조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명권자, 자격요건, 임기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명권자 관련 GDPR은 의회, 정부, 국가수장 또는 법률에 의한 임명이 위임된 독립기구 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7조의2 제2항)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둘째, GDPR은 자격요건과 관련 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직무 및 권한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3급 이상 즉 고위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이들로부터 추천받은 자, 5년 이상 부교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유지하고, 현직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32)</sup> 그러나 개정안의 ‘단체’에는 위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명기하는 것이 적정성 결정의 필요적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7조의9 제2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본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특정 자격과 경력을 지나치게 구체화(3년, 5년, 3급, 부교수, 임원 등)하고 있으며 합산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전문성 확보하려는 위원자격의 취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참여는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나,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적정성 요건 충족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셋째, 임기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의 법률에 의거한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 시 임무는 종료되며, 위원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거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임되어야 한다(GDPR제53조).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안 제7조의4 제1항)),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의5 제1항), 결격사유(안 제7조의7 제1항)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 바 GDPR의 임기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32) 시민단체, 앞의 자료

본다.

<표3> GDPR 위원의 일반 요건과 개정안 내용 비교

GDPR	개정안	분석
<p><b>(임명권자)</b> 의회, 정부, 국가수장 또는 법률에 의해 임명이 위임된 독립기구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li> <li>-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7조의2 제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적정성 요건 충족</li> </ul>
<p><b>(자격요건)</b> 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직무 및 권한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 임명 또는 위촉(안 제7조의2 제2항 각호)</li> <li>-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li> <li>-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li> <li>-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유지하고, 현직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sup>33)</sup></li> <li>- 그러나 개정안의 ‘단체’에는 위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명기하는 것이 적정성 결정의 충족요건으로 보이지는 않음</li> <li>- 다만 특정 자격과 경력을 지나치게 구체화(3년, 5년, 3급, 부교수, 임원 등)하고 있으며 합산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오히려 경력산정에 한계</li> <li>- 현직 공무원의 참여는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나,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li> <li>- 전체적으로는 적정성 요건 충족</li> </ul>

(임기)해당 회원국의 법률에 의거한 임기만료, 사임, 해임시 임무는 종료되며, 위원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거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안 제7조의4 제1항)</li> <li>-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5 제1항)</li> <li>-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7조의7 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를 구체화 한 것은 바람직</li> <li>- 적정성 요건 충족</li> </ul>
---	--	---

나. 법적 근거

GDPR 제54조에 의하면 i) 감독기관의 설립, ii) 위원의 임명자격과 조건, iii) 위원의 임명 규칙 및 절차, iv) 위원들의 재임명 가능여부 및 연장에 관한 사항, iv) 위원회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 의무저촉행위의 금지 및 고용중단에 관한 규칙, v) 임직원의 임기 중과 임기 후 기밀유지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GDPR 상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과 개정안 내용 비교

GDPR	개정안	분석
감독기관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li> </ul>	법적 근거 완비
위원의 임명자격과 조건, 임명 규칙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li> <li>-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의5 제1항)</li> </ul>	상동
위원들의 재임명 가능여부 및 연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임기(제7조의4 제1항)</li> </ul>	상동
위원회 임직원의 이해상충행위, 의무저촉행위의 금지 및 고용중단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7조의5 제1항)</li> <li>- 위원의 겸직금지(안 제7조의6 제1항)</li> <li>- 위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안 제7조의7 제1항 및 제2항)</li> <li>-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li> </ul>	상동

33) 시민단체, 앞의 자료.

	제7조의11제1항)	
임직원의 임기중과 임기 후 기밀 유지의무	- 비밀유지의무 규정(법 제60조 제1항)	상동

다. 권한

GDPR 제58조는 감독기관의 조사권한, 시정권한, 인가(승인) 및 자문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규제의 위반사례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권한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GDPR제58조 제5항).

개정안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거의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GDPR 감독기관의 권한과 개정안 내용 비교)와 같다.

<표5> GDPR 감독기관의 권한과 개정안 내용 비교

구분	GDPR	개정안	분석
1. 조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정보제 공요구권</li> <li>- 감사 형식의 조사권</li> <li>-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에 대한 검토</li> <li>-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법규 위반 혐의 통지</li> <li>-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부터 모든 개인정보 및 모든 정보, 개인정보 처리장치 및 수단 등에 대한 열람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 실시(안 제11조 제2항)</li> <li>-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안 제63조제1항)</li> <li>-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권(안 제63조제2항)</li> <li>-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 요구 및 공동 참여 검사권(안 제63조제4항)</li> <li>- 중앙행정기관과 합동 실태 점검(안 제63조제7항)</li> <li>- 인증에 대한 (안 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R상의 요건 충족</li> </ul>

<p>2. 시정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li> <li>- 법규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등에 대한 견책</li> <li>-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따르도록 지시</li> <li>- 개인정보처리시 조문 준수하도록 지시</li> <li>-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시</li> <li>- 개인정보 처리금지 조치</li> <li>- 개인정보 처리의 수정, 삭제 또는 제한 지시</li> <li>- 인증 철회 조치</li> <li>- 행정벌 부과</li> <li>-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동 중지 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안 제63조제5항)</li> <li>- 법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64조제1항)</li> <li>-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안 제34조제3항)</li> <li>- 고발 및 징계권고(안 제65조제1항)</li> <li>- 벌칙(안 제10장)</li> <li>- 과징금 부과(안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6)</li> <li>-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안 제32조의2 제2항및 제3항)</li> <li>-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8 제1항 제3호)</li> <li>-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안 제7조의8 제1항 제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R상의 요건 충족</li> <li>-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동 중지 지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형태로 가능</li> </ul>
<p>3. 인가 (승인) 및 자문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평가에 대한 사전자문</li> <li>- 유관 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의견 제시</li> <li>- 개인정보 인증기구의 인가</li> <li>- 개인정보 인증 발급 또는 인증기준에 대한 승인</li> <li>- 정보보호 표준의 채택</li> <li>- 제3국 이전 계약 조항의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평가 결과 의견제시,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보급(안 제33조제2항 및 제3항)</li> <li>-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안 제61조 제1항 및 제2항)</li> <li>- 개인정보 인증 발급 또는 인증기준에 대한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R상의 요건 충족</li> <li>- 다만 ‘제3국 이전 계약 조항의 승인’의 경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내용으로 넣어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나 기구 간의 행정 협정에 삽입될 것으로 강제력이 있고 유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포함한 규정의 승인</li> <li>- 의무적 기업규칙의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 제32조의2)</li> <li>-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보호위 소관사무, 안제7조의8 제1항 제1호)</li> <li>-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 권고 (안 제12조 제1항)</li> <li>-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표</li> </ul>	<p>으며,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권고 및 이행노력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역내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대한 적정성 모니터링’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문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짐</li> </ul>
--	---	---

## 2. 개인정보 역외이전

역외이전 규정은 적정성 결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EU시민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에 이전되었는데, 대한민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불충분한 국가로 자유롭게 다시 이전될 수 있다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적정성 인정을 얻지 못한 하나의 이유로 역외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라이버시법상 역외 적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회사가 당해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가 불충분한 국가에 수출한 경우 EU 시민의 권리이익이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sup>34)</sup>

일본도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제3국에 개인정보를 이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의무를 우회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sup>35)</sup> LIBE(The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역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 즉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6)</sup>

34) Opinion 3/2001 on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Australian Privacy Amendment (Private Sector) Act 2000 (Adopted by the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n 26 January 2001), at 4-6.

35) Graham Greenleaf, Japan and Korea: Different paths to EU adequac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2018 PRIVACY LAWS & BUSINESS, 2018.12, p.9

36) Graham Greenleaf, Japan and Korea: Different paths to EU adequac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2018 PRIVACY LAWS & BUSINESS, 2018.12, p.9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없는 국외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규정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sup>37)</sup>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도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개정안 제6장)에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이관하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9조의13(현행 「정보통신망법」 제63조)은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개인정보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외에 ‘제공·처리위탁·보관’을 “이전”으로 규정하고,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면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처리위탁의 경우 동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의 전 고지 사항인 ‘①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또한 이러한 국외이전 개인정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되,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제17조제3항과 제39조의13은 단순히 각 법에 있는 사항을 기계적으로 하나의 법안에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우선 안 제39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만 국제계약의 금지는 법 제17조제3항에서도 동일하게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규정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GDPR이 감독기관의 권한에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동 중지 지시' 및 '제3국 이전 계약 조항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국제계약의 금지는 비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제17조 제3항과 제39조의13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이전 시 동의 받기 전 사전고지사항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6>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동의 받기 전 고지사항

현 행	개 정 안
-----	-------

37)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안 제39조의13(현행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li> <l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li> <li>-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li> <li>-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li> <li>-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li> <li>-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li> <li>-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li> <li>-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li> <li>-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li> </ul>

거의 대동소이하되 다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양자 모두 정보주체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바 통합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제17조는 ‘제공’에 대하여만 규정하나 제39조의13은 ‘이전’의 개념에 ‘제공·처리 위탁·보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바, 국외이전의 형태는 ‘제공’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밖에 ‘일본’ 및 GDPR의 규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상응하는 국가에 대한 이전과,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준수하는 제3자에 대한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외국과의 개인정보 처리 계약을 금지하고 엄격한 사전고지 및 동의를 통해 GDPR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국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강력한 국내법 집행이 미흡했던 것이 오히려 EU에서 우리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3. 유관법제의 통일성 확보

우리는 2011년 9월부터 발효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위치 정보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등 다수의 영역별 법령이 통일적이지 못하게 혼재되어 있다.

#### 가.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망법」을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분 적정성결정’이 거절된 것만 보더라도



통일적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은 중요하다. EU의 GDPR 규정이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2002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38)의 특별법적 지위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 역내의 명실상부한 일반법의 지위를 부여한 것<sup>39)</sup>을 볼 때 통일성 있는,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는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에 그대로 이관해 놓은 형태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법안의 통일적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전체적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중복 부분은 그대로 통합하되,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표7>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규정」 비교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보법 개정안 특례규정(제6장)	비고
수집·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동의</li> <li>- 계약의 체결 및 이행</li> <li>-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li> <li>-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li> <li>-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li> <l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동의</li> <li>- 계약의 이행</li> <li>- <b>요금정산</b></li> <li>- 법률에 특별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li> <li>- 다만 ‘요금정산’의 특례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li> </ul>
동의에 의한 수집 시 고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이용 목적</li> <li>- 개인정보의 항목</li> <li>- 보유·이용 기간</li> <li>-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이용 목적</li> <li>- 개인정보의 항목</li> <li>- 보유·이용 기간</li> </ul>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개인정보수집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최소한 수집 원칙</li> <li>- 불필요한 정보 수집 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최소한 수집 원칙</li> <li>- 불필요한 정보 수집 거부</li> </ul>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

38) Directive 2002/58/EC.

39) 함인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공익법센터, 2013, 168면.

	<p>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li> </ul>	<p>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p>	<p>「보통신방법」 규정 포괄</p>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수집금지</li> <li>- 예외 : 동의, 법령의 요구 또는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 수집금지</li> <li>- 예외 : 동의,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li> </ul>	<p>「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방법」 규정 포괄</p>
주민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 처리금지</li> <li>- 예외적으로 허용</li> <li>①법령상 요구·허용</li> <li>②<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li> <li>③<u>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 수집·이용 금지</li> <li>- 예외적 허용</li> <li>① 법령상 허용</li> <li>②<u>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u></li> <li>③<u>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u></li> </ul>	<p>「정보통신방법」상 특별규정 존재</p>
제3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동의</li> <li>-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li> <li>-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li> <li>-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동의</li> <li>- 법률에 특별한 규정</li> <li>- <u>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li> </ul>	<p>「정보통신방법」상 특별규정 존재</p>
처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에 의한 위탁</li> <li>-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위탁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li> <li>-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관리의무</li> <li>- 법위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 소속지원으로 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용자에게 고지사항(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u></li> <li>- <u>고지 및 동의절차 생략(공개/전자우편 등) 규정</u></li> </ul>	<p>「정보통신방법」상 특별규정 존재</p>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u>보호</u>책임자 지정</li> <li>- 개인정보<u>처리</u>방침 공개</li> <li>- 개인정보 보호 인증</li> <li>- 개인정보 영향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u>관리</u>책임자 지정</li> <li>- 개인정보<u>취급</u>방침 공개</li> </ul>	<p>「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방법」 규정 포괄</p>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의 경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 경과</li> </ul>	<p>「정보통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 목적 달성</li> <li>- 기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이용목적달성</li> <li>- <u>사업의 폐업</u></li> <li>- <u>1년 동안 미이용자 정보</u></li> </ul>	법」상 특별규정 존재
개인정보누출 통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li> <li>-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li> <li>- 방송통신위원회(개정안은 보호위로 변경)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li> </ul>	규정내용 대동소이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li> <li>-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li> <li>- 접근 통제 및 권한 제한 조치</li> <li>-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li> <li>-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li> <li>-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li> <li>- 보관시설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관리적 조치</li> <li>-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li> <li>-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li> <li>-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li> <li>-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조치</li> <li>-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li> <li>-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li> </ul>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할 것을 규정</li> </ul>	「정보통신망법」상 특별규정 존재
정보주체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청구권</li> <li>- 정정삭제청구권</li> <li>- 처리정지요구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제공·정정 요구권</li> <li>- 수집·이용·제공 등의 철회권</li> <li>- 수집보다 쉬운 방식으로 철회권등 이행 확보</li> <li>- <u>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u></li> <li>- <u>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u></li> </ul>	「정보통신망법」상 특별규정 존재
국내대리인의 지정	-	- <u>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u>	「정보통신망법」상 특별규정 존재

		<b>대리인 지정</b>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 청구(300만원 이하)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 법정손해배상 청구(300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포괄
	-	- <b>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조치</b>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	- <b>‘제공·처리위탁·보관’을 포함함 “이전”에 대하여 규정</b>	「정보통신망법」이 더 넓은 개념
	- 법 위반 국외 이전 계약 체결 금지	- 법위반 국제계약의 금지	대동소이
	- 사전고지사항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사전고지사항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나머지 고지사항은 대동소이
상호주의	-	- <b>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 가능</b>	「정보통신망법」상 특별규정 존재

#### 나. 위치정보 분야

한편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규정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를 하고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각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중복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수집규정(제18조, 제19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sup>40)</sup>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파기, 정보주체의 동의철회권, 열람·고지·정정요구권 등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위치정보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40)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동의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제2항) 그 내용은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이다. 「위치정보법」상 약관기재사항은 이 외에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추가하고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구체화 시켜놓은 것에 불과하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위치정보법” 제26조)’ 등 극히 몇 개의 특칙을 제외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국민, 법 적용·집행기관 등 수범자의 편의와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안에서 통합, 일원화 되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41)</sup>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러한 중복/유사 개정에 대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신용정보 분야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검사 등을 대신하여 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 검사권, 출입권, 질문권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나, 결국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관할은 여전히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가 소관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간 유사한 제도로 인해 실제 각종 조치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업무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며, 그 도입취지 또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정한다는 면에서 대동소이하다. 실무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함으로써 규범의 준수를 피하겠지만 양자는 엄격히 수범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중복규정이라 할 수 있다.

<표8>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구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수행 업무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1)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第28卷 第1號(2016.03), 50-55면.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기타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제31조에서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0조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입법의도와 취지가 동일 한 바 이 역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수립, 공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도입의 통해 수범자의 업무부담을 감경시켜 줄 필요가 있다.

<표9> ‘신용정보활용체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비교

구분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법」 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공시 공개 사항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p>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p> <p>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p> <p>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p> <p>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p>	<p>(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p> <p>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p> <p>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p> <p>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p> <p>8.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p>
<p>공시 방법</p>	<p>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p> <p>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p>	<p>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p> <p>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li> <li>-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li> <li>-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li> <li>-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li> </ul>
<p>기타</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li> <li>-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음</li> </ul>

그밖에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누설통지’ 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와 그 도입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다. 양자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부분(금융위원회에 신고 등)만 별도로 규정하되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 제도를 연계시키거나 같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sup>42)</sup>

결국 이러한 유사규정을 「신용정보법」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영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게 규율해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며 그러한 사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도 보호위원회에 총괄적 권한을 주되, “긴급하면서도 중점적으로 개인정보 등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政令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권고 또는 명령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한을 사업소관大臣에게 위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금융청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하며, 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한다(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4항)” 고 규정한다.

#### 라. 소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것과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내용이 없을 때에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서 혹은 조세·교육·의료·복지 등의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늘어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많이 두면 들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의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명목적인 지위만 지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sup>43)</sup>

GDPR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본다면 EU는 개인정보에 대한 다수의 특별법으로 인해 명목화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EU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전된 자국민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투명하고, 복잡다난 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개별법들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수범자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법령이 적용될지, 어느 기관의 규제와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될지, 어떤 절차에 의해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 EU 시민은 우리법의 직접적 수범자는 아니지만,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대한민국 기업이 처리할 경우 이러한 혼란은 그대로 EU시민에게도 적용된다. 명백히 예외적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한 신

42) 김현경, 앞의논문, 43-47면

43)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10, 37면



규 혹은 별도 개인정보 관련 입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기타

그밖에 GDPR상의 ‘개인정보 이동권’, ‘잊힐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적정성 결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사항이 적정성 판단과정에 있어서 그 가부를 논하는 핵심적 사항은 아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여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GDPR에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이유는 “익명처리와 가명처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및 가명처리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 GDPR은 가명처리와 가명처리정보를 GDPR의 적용범위에 포섭시키는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정보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른 추가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과학 및 역사 연구, 통계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정보를 빅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GDPR에서 가명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이유는 활용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판례(IMEI판결 등) 등을 통해 볼 때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정보’의 개념을 넓게 판단하고 있으며, GDPR상의 가명정보 역시 당연히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그 활용의 범위는 오히려 예외를 규정한 GDPR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제사회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개정법의 목적에 명확히 기술하면서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회색지대에 대한 부분을 익명가공정보라 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규정대로라면 GDPR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법상의 개인정보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며, “비활용친화적”인 상태이므로 EU시민의 개인정보권 침해를 우려하는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가명처리정보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적정성 평가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가명처리’에 대한 입법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시 GDPR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에 대하여 GDPR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협의과정을 가지게 되며, 적어도 4년마다 다시 승인절차에 들어가야 하므로 적정성 결정의 시기를 놓치지 보다는 우선 협상테이블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간 참여하고도 시간이 소요되는 논쟁과 다툼이 예정되어 있음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를 뒤로하고, 우선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브릿지 차원에서의 전략적 입법의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IV. 결 론

GDPR의 시행이 유럽의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유럽방식도, 미국방식도 우리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바이두 같은 토종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정부분 전략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경제체계의 근본적 다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적당한 벤치마킹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입법정책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익 우선의 개인 정보 규범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의 현재 데이터 시장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기회이다. 유럽의 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GDPR의 ‘적정성 결정’을 득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의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부터 해결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적정성 결정을 한번 득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최소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우선 전략적 입법 방식으로 적정성 결정을 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고, 이견이 첨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처리 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조속한 처리가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우선 적정성 결정을 위한 부분적 개정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추어 적정성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정성 평가 시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보완입법의 우선적 추진, 즉 ‘개인 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개인정보 역외이전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그밖에 우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GDPR에 규정된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평가(Profiling)에 관한 권리’ 도입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 결정의 필수적 사항은 아닌 바,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8. 8.  
\_\_\_\_\_,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 2017.12.  
\_\_\_\_\_,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 2017.  
\_\_\_\_\_,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 2017.12.
- 구태언, EU-GDPR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국익을 위해 변화해야, □피터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프라이버시, Privacy Frontline(Season IV)□ 한국CPO포럼, 2017. 12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10.
-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12.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 김주영·손형섭,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법문사, 2012
-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第28卷 第1號, 2016.03.
- 박광배·김태주·한혜원,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박영사, 2016
- \_\_\_\_\_, 채성희·김현진,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 체계: 추론된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8. 25
- 손형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2017. 12
- 이성엽, 개인정보보호3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특집세미나 자료집 토론문, 2018.12.18.
- \_\_\_\_\_, “한국의 ICT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단일행정부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34, 2012.
- 이인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55집, 2014.
- 이인호/유충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보고서, 2017.
- 이원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행정법연구, 行政法研究 第30號, 2011.08
- 오태현, “EU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5.
- 정용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 KISDI Premium Report(18-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8. 7.
- 조성은·민대홍, GDPR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KISDI Premium Report(18-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8. 1.
- 차상욱,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4. 30.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2013.

채성희, GDPR의 지리적 적용범위와 EU 역외 전송에 관한 문제들, Privacy Global Edge 2018 자료집, 2018. 6. 29.

,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문제점과 준수방안, 제21회 해킹 방지워크숍 자료집, 2017. 12.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 시사상식 201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4.12. 31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

\_\_\_\_\_,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경제규제와 법, 2013.

\_\_\_\_\_, “EU ePrivacy규칙(ePR)안의 검토와 시사점”, 전남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8.5.

홍선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에 따른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5. 31.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 2014.6.

Kristina Irion, 권현영, [국문번역문]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EU 법률의 이해. 경제규제와 법, 11(2), 58-71. 2018.

Opinion 3/2001 on the level of protection of the Australian Privacy Amendment (Private Sector) Act 2000 (Adopted by the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n 26 January 2001), at 4-6.

Graham Greenleaf, Japan and Korea: Different paths to EU adequac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2018 PRIVACY LAWS & BUSINESS, 2018.12, p.9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Japan), Supplementary Rule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Handling of Personal Data Transferred from the EU based on an Adequacy Decision.

宇賀克也,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第5版], 有斐閣, 2017,

## 【Abstract】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EU GDPR Adequacy Decision

Hyunkyung Kim, Kyungjun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Abstract>

GDPR prohibit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ffshore", in which the national data are transferred without any restrictions to foreign companies. However, if the company complies with the appropriate safeguards required by the GDPR, or if it receives a "Adequacy Decision" at the national level, companies in that country may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further action. So, the most efficient way for domestic companies to process EU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s to obtain a 'adequacy decision' at the country level.

In this paper, as examining the case of Japan which has obtained 'adequacy decision' recently, the necessary point in order to obtain the 'adequacy decision' is drawn. As a measu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restriction of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and uniform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laws. And this paper suggests a revision direction. Considering the amendment bil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a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resented by Representative Min Jae-keun) the independence requir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is usually satisfied. However, there is a need for linking with individual personal information supervisory agencie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lthough legal supplementation is important for the restriction of data transfer to third countries, effective enforcement of global companies is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more specific provisions are placed on individual law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less the existe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will be. As a result, it may result in only keeping a nominal position. Therefore, if there is no need for a clearly exceptional case, separat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voided.

Key Word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dequacy Decision,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ies,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Improv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